

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(1처리장) 관리대행 동의안

의안 번호	212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중량·서남 시설현대화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중량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(1처리장)이 2018년 2월 중 준공 예정인 바, 동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강화된 방류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.
- 나. 중량물재생센터는 현대화시설 착공 전 대비 40명의 정원이 감소된 상태이며, 동 시설의 하수처리공법은 생물막여과공법으로 대용량 하수처리시설에 적용사례가 적어, 직영 운영시 전문 운영인력 충원이 필요하나, 단기간에 많은 전문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음
- 다. 이에 따라 운영경험과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관리대행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중량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(1처리장) 관리대행

나. 추진근거

- 하수도법 제19조의2 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(관리·운영의 위탁)

다. 추진 필요성

- '16년 10월 중량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(1처리장) 직무분석 용역결과 최소 운영인력은 추가로 29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으나
- 부족한원인에 대한 인력충원이 어렵고, 신규 채용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단기간 운영능력 습득에 어려움이 있으며
- 또한, 관리대행 예정인 현대화시설의 주처리 공정인 생물막 여과공법은 대용량 하수처리장에 적용된 사례가 적고, 기존 운영중인 MLE, A₂O, 표준활성오니법 등 일반 공법과는 다른 생소한 처리공정으로
- 환경기초시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민간 전문 기관에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(1처리장) 관리대행 함으로써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라. 위탁사무 내용

- 현대화시설 수처리분야 운영
- 수질분석 및 법정방류수질 준수에 관한 사항
- 기계, 전기장치 등 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
- 운영 조건별 운영인자 및 운영자료 정리, 보고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시설 견학을 위한 방문자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마.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중량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(1처리장)
- 소재지 :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(용답동)
- 시설규모 : 25만 m³/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하수도법 제19조의 2

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관리대행업자”라 한다)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

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·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

나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※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이창하(☎ 2211-2593)